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발표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뽑은 두 주제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 와 인트라넷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방학이 시작하기는 커녕 한창 놀 때였기 때문에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자료가 많이 없다는걸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면 일반거래조건협정서란 뭘까요?

사전에는 헤렐렐레레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있듯이 일정부분에대하여 협정을 맺음으로써

업무의 간소화와 분쟁의 가능성을줄일수 있는것인데

저는 그 일정부분이너무나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조항을 이용하여 설명

권리침해,불가항력,완전합의,권리불포기, 손해배상액, 가분성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권리침해조항은 A가 B에게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B가 판매시에 제품에

타사의 권리가 침해되었을경우 책임은 A가 진다는것입니다

불가항력조항이란 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였을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완전합의조항이란 완전합의조항이 포함된 그 계약서가 전부이며 그 전에 있었던

계약에 대한 합의는 모두 본 계약서에 통합된다는 내용으로 양 측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대리자가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고서는 수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권리불포기조항이란 본 협정에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양 측이 서면으로 인정하거나 확정하지 않고서는 양측의 어떠한 클레임 권한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사진에서는 A와B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제품의 대가로 월마다 500만원씩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계약을 불안정하게 이행했습니다

B씨는 4월까지는 클레임을 제가하지않았지만 5월에 클레임을 제기하게됩니다

A씨는 4월까지의 계약불완전이행에 대해 B가 클레임을 걸지 않았으니 권리를 포기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권리불포기조항에 의해 A씨와B씨가 서면으로 클레임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B씨의 권리는 포기된것이 아니므로 5월의 클레임은 유요한것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예정조항이란 이름과같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두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분성조항은 어떠한 조항의 전체또는 일부가 법척효력이 없어지거나 무효화될 경우 그 계약의 다른 조항은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또한 양 측은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해당 조항을 의도에 맞추어 유효가능한 조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사진의 내용에서는 계약서중 4번조항이 계약성립후 발견되었을때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않고 4번조항을 양측이 동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로 알 수있듯이 일반거래조건협정서는 계약전 손해배상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예외처리한 목록을 정리해 둔 것 입니다

[Agreement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304f74169edf4c80b503b86ad25ba8d8)